

**2015년도 인천남구노인복지관
특정감사 실시결과 결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감 사 실)

2015년도 인천남구노인복지관 특정 감사 실시 결과

I . 감사개요

1. 감사범위

가. 수감기관 : 인천남구노인복지관

나. 감사범위 : 2012. 9. 1 ~ 2015. 9. 30일 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2. 감사기간 : 2015. 11. 2 ~ 11. 6 (5일간)

3.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4. 중점 감사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의 적정성 여부

나. 예산집행(보조금 등) 및 결산 적정성 여부

다. 후원금(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라. 관리부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마. 인사 및 직원 근무실태, 기타 관련규정 이행실태 등

II . 감사결과

1. 총 괄 : 지적사항 총8건(주의8건)

2. 주요 지적사항

◆ 후원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 등)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있어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 41조의 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3의3호」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토록 하여 후원금 관리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남구노인복지관에서는 총 169건의 후원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처리 함에 있어 물품에 대한 환산가액 근거 없이 총 148건의 후원품에 대하여 영수증 교부처리 함

- ◆ 처분요구 : 향후 후원물품에 대한 접수시 영수증을 확보하고 물품의 가격 근거가 없을 경우 통상가격을 확인하여 환산가액에 대한 근거를 구비하도록 할 것 (주의)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신고의무 미이행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제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인천남구노인복지관에서는 2015. 6.3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기부금 영수증에 대하여도 2015.11. 2일에 지연하여 제출함.

➡ **처분요구 : 향후 기부영수증에 대하여 기한 내 제출 할 것(주의)**

◆ 인사관리 소홀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2015년도 노인복지관 운영 지침에 의하면 노인복지관 직원의 자격을 관장 및 팀장 이상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남구노인복지관에서는 직원 2명에 대하여 범죄경력조치를 누락하였고, 직원 27명에 대하여는 근무일 이후 범죄경력 조회 실시
☞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시 지원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 이상 및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제한을 둠

➡ **처분요구 : 향후 직원 채용 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과 채용절차 등을 준수하여 채용하기 바람(주의)**

◆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건강진단 결과 미확인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의하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염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남구노인복지관에서는 2015년 8월중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38명에 대하여 건강진단결과를 확인하지 않음

➡ **처분요구** : 향후 경로식당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결과를 확인 후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주의)

◆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미이행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함에도,

☞ 인천남구노인복지관에서는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남구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보고를 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 거친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 **처분요구** : 향후 동 건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당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주의)

◆ 보조금 교부신청 변경절차 미이행

-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 인천남구노인복지관에서는 사업의 변경으로 2013년도 4회, 2014년도 4회,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구청장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 **처분요구** : 향후 동 건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주의)

◆ 기타운영비 집행 부적정

- 201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예산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기타운영비로는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등록비 및 참가비,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 인천남구노인복지관에서는 워크숍 등 행사에 따른 등록비, 참가비가 아닌 직원연수를 명목으로 숙박비, 식사비, 식재료구입, 간식비 등에 집행

➡ **처분요구** :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회계 집행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항이 확대 해석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주의)

◆ 관용차량 정비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제1항 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제3항 규정에 의거 정비업자는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인천남구노인복지관에서는 관용차량의 정비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정비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한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받고 정비가 완료된 후에는 이를 증명하는 점검·정비 명세서를 발급받아 신품 또는 중고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정비내용대로 정확하게 정비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함에도 관용차량 정비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음



처분요구 : 관용차량의 정비전·후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를 정비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증빙서류로서 보관 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주의)